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87

발의연월일: 2021. 3. 3.

발 의 자: 강민정・심상정・최강욱

정성호 • 이상헌 • 강득구

이성만 • 용혜인 • 강병원

김진애 · 남인순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.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.

교육감은 교육 예·결산, 초·중·고등학교의 설치·이전·폐지, 교육과 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.

이에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23조 및 제47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48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 중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.

제47조제1항 단서 중 "교육감선거에서 해당"을 "교육감선거에서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해당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후보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1항 단서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3조(겸직의 제한) ① (생 제23조(겸직의 제한) ① (현행과 략) 같음) ②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 (2) ----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. <단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 중 서 신설>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제외 한다. 제47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제47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-「공직선거법」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은 선거일 전 90일(제49조제1 항에서 준용되는 「공직선거 법」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)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. 다만, 교육감선 -----교육감선거에 서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 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 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해당 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같은

니하다.	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라
	휴직을 하거나 해당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